(가칭) 충신동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

본인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4조에 따라 (가칭) 충신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제안서 제출에 동의하며,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.

■ 동의 내용

- 정비예정구역 위치: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동 일대
-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대한 동의
- 동의서 제출 후에도 법령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철회할 수 없음

■ 토지등소유자 인적사항

성명:

주소 또는 소유 지번:

생년월일 (또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):

연락처:

소유 부동산의 종류: (예: 대지, 건물 등)

서명 또는 인감:

※ 유의사항

- 본 동의서는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3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제안서 제출을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문서입니다. - 허위 또는 타인의 명의로 작성된 동의서는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며 무효 처리됩니다. - 본 동의서는 '주민총회 투표용지'와는 별도로 제출되어야 합니다. - 자필 서명 또는 인감 날인이 필수입니다.